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747 호 |
| 의결연월일 | 2026. 1. 9. (제311회 임시회) |

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발의자 | 안효돈 의원 외 10명 |
| 발의연월일 | 2025. 12. 19. |

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

[안효돈 의원 대표발의]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747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9.

발 의 자 : 안효돈, 가선숙, 강문수,
김맹호, 김용경, 문수기,
안동석, 이경화, 이정수,
최동묵, 한석화 의원

1. 제정이유

- 서산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업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업인을 발굴·포상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-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며,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상의 명칭, 시상부문 및 인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및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시상 및 특전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및 제15조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나. 관련 조례: 「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2조
「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」 제2조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산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인”과 “생산자단체”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정의와 같다.
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「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.
3. “여성농업인”이란 「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.

제3조(상의 명칭) 이 상의 명칭은 서산시 농업인대상이라 한다.

제4조(시상부문과 인원)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식량작물 부문
2. 원예·특작 부문
3. 축산 부문
4. 청년농업인 부문
5. 여성농업인 부문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문

② 시장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농업인 1명 또는 생산자단체 1개로 한다.

③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.

제5조(수상후보자의 자격) ① 수상후보자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.

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.

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.

제6조(수상후보자 추천 절차)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·면·동장이 서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 다만, 지역농업협동조합장,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.

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통

2. 공적조서 1통

3.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 및 선정)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.

제8조(시상) 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(11월 11일)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(수상자에 대한 특전)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충청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
2.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
3.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 참고사항 》

가. 관련법령

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[시행 2025. 4. 23.] [법률 제20503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4. “생산자단체”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5. “농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(이하 생략)

제15조(정책심의회)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, 시·군 및 자치구에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,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

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2. 제17조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 3. 그 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“농어업경영정보”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농업경영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농지·축사·임야·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·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농업경영정보”라 한다)
2. 어업경영체: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어선·양식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·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관련조례

■ 「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

[시행 2023. 11. 14.] [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54호, 2023. 11. 14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농업식품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(이하 “수산업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인”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.
3. “청년농어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
 - 나.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

■ 「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」

[시행 2022. 12. 31.] [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766호, 2022. 12. 1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.
3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4. “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”이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다. 예산조치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표창 제작비(안 제4조)
 - 부문별 5개 항목 x 110,000원 = 550,000원
- 심사 참석수당(안 제7조)
 - 농정분과 위원 14명 x 200,000원 = 2,800,000원
- 국내외 연수(안 제9조)
 - 5명 x 5,000,000원 = 25,00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- 추계결과 : 연평균 28,350천원

4.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성 광 석